

법정에 히잡을 착용한 청구인의 퇴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합치되는지 여부¹⁾

1. 사건개요

이 사건 청구인인 Hagar Lachiri는 자신의 형제가 살해당한 치정범죄사건에서 자신의 여러 가족들과 함께 브뤼셀(Bruxelles) 1심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의 사건에서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18일의 결정을 통해 살인의 혐의를 받는 자를 경범재판소(tribunal correctionnel)에 이송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다른 손해배상청구인들은 피고인의 고의적 살인을 인정하여 이 사건을 중죄재판소(cour d'assises)로 이송할 것을 주장하면서, 브뤼셀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2007년 6월 20일 이슬람교를 믿는 청구인은 히잡을 쓰고 항소법원의 법정 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법정에 들어갈 때 법정 경비원은 재판장의 이름으로 히잡을 벗지 않을 경우 법정에 들어갈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히잡을 벗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항소법원의 법정 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2007년 9월 12일의 결정을 통해 브뤼셀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청구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 벨기에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 앞의 시민의 평등원칙 및 유럽인권협약 제6조2)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과 다른 손해배상청구인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였지만, 벨기에 파기원 또한 2008년 6월 25일의 결정을 통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

1) AFFAIRE LACHIRI c. BELGIQUE, Requête no 3413/09, CEDH, 2018. 9. 18. 결정.

2) 유럽인권협약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정인섭 편역, 증보 국제인권조약집, 경인문화사, 2008, p. 619.

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히잡을 벗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법정출입을 금지한 것은 자신의 종교를 표현할 자유(유럽인권협약 제9조³⁾)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인권협약 제34조⁴⁾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24일에 유럽인권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강 대학의 인권센터’(Centre des droits de l’homme de l’université de Gand)는 서면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유럽인권협약 제36조 제2항⁵⁾).

2. 청구인과 정부 측의 주장 및 소송참가인의 의견

(1) 청구인은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법관을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사법 법전(code judiciaire) 제759조⁶⁾은 그 자체로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법관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나타내는 것을 착용한 청구인을 퇴장시키는 데 사법 법전 제759조를 원용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정부 측은 사법 법전 제759조는 법정의 질서를 규정하며, 그 자체로는

3) 유럽인권협약 제9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이나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공공의 안전에 필요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정인섭 편역, 위의 책, p. 620.

4) 유럽인권협약 제34조 개별 제소 “재판소는 협약 또는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를 체약국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비정부기구, 개인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접수한다. 체약국은 이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정인섭 편역, 위의 책, p. 623.

5) 유럽인권협약 제36조 제3자 소송참가 “1. 소제관부 또는 대제관부가 다루는 모든 사건에서 원고의 출신 체약국은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심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재판소 소장은 재판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소송의 당사국이 아닌 체약국이나 원고가 아닌 개인에게 서면자료의 제출이나 심리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의 책, p. 624.

6) 벨기에 사법 법전 제759조 “법정에 출석하는 자는 존경과 정숙을 하면서 모자를 벗는다.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판사가 명하는 모든 것은 어김없이 즉각 집행된다.”

유럽인권협약 제9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개별 사안별로 사법 법전 제759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소송참가인의 의견

‘강 대학교 인권센터’는 우선 일체의 머리 덮개를 벗는 행위는 교회나 주택에 들어갈 때 그 기관 또는 사람의 권위를 존경하거나 인정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표시로, 현행 사법 법전 제759조는 이러한 관행이 있었던 19세기에 채택된 구 사법 법전을 받아들인 조항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법 법전 제75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는 이 조항의 적용에 대해서 법관들 사이에도 혼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법관은 법정에서 머리 덮개를 벗을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20% 정도의 법관은 법정에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는 머리 덮개를 벗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송참가인은 사법 법전 제759조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 외에 어떤 사람에게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는 머리 덮개를 벗도록 하기 위해 적용될 때, 법정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은 추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3. 판결요지

- 법정의견⁷⁾

[유럽인권협약 제9조의 위반주장과 관련하여]

7) 유럽인권협약 제9조의 위반에 대해서 6:1 위반으로 결정하였음(2인의 별개의견이 있음).

(1) 유럽인권협약 제9조 제2항이 의미하는 “제한”의 존재에 대하여

이슬람교를 믿고 히잡을 착용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본 재판소는, 본 재판소의 선례에 따라, 히잡의 착용은 “어떤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거나 고취된(영향을 받은) 하나의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⁸⁾

그러므로, 본 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히잡을 벗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정에서 퇴정시킨 것은 청구인의 종교를 나타낼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즉, 이와 같은 제한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 제2항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정당한 목적에 의해 고취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목적 또는 목적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해”야 한다.

(2)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에 대하여

본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 내지 제11조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이라는 표현은 비난받는 조치가 국내법에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법률의 질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률은 청구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효과가 예견가능해야 한다.⁹⁾ 예측가능성의 요청과 관련하여, 본 재판소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된 규범만이 “법률”(loi)로 간주될 수 있다고 여러 번 판시하였다.

이 경우에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8) Leyla Şahin c. Turquie [GC], n° 44774/98, §78, CEDH 2005-XI, et Dogru c. France, n° 27058/05, §47, 4 décembre 2008.

9) 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et Satamedia Oy c. Finlande [GC], n° 931/13, §142, 27 juin 2017 참조.

2007년 6월 20일 법정 경비원이 브뤼셀 항소법원의 재판장의 이름으로 청구인에게 한 구두경고와 2007년 9월 12일의 브뤼셀 항소법원의 결정을 통해 볼 때, 청구인에 가해진 조치의 법적인 근거는 사법 법전 제759조이다.

남아 있는 문제는 사법 법전 제759조가 이해가능성(*accessibilité*) 및 예견가능성(*prévisibilité*)의 요청을 충족하는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의 법률규정의 이해가능성은 이 사건에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효과의 측면에서 사법 법전 제759조의 예견가능성은 그렇지 않다. 즉, 청구인이 벨기에 국내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제기한 논쟁 및 소송참가인의 의견에 따르면, 벨기에 법관들의 사법 법전 제75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적 불안정성의 근원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재판소가 제한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도달한 결론을 고려하여, 본 재판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 “정당한 목적”과 관련하여

본 재판소는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에 대한 제한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과 달리 정부 측이 이 사건에서의 제한이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과 관련된 정교분리적 및 민주주의적 가치의 보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반면에, 사법 법전 제759조의 표현에 따르면, 법정에 모자를 벗고 들어가는 야하는 의무는 사법제도에 대한 무례한 행동 또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2항¹⁰⁾만이 “사법권의 권위의 유지”에 관련되며,¹¹⁾ “사법권의 권위의 유지”는 제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에 속

10) 유럽인권협약 제10조 표현의 자유 “...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무질서와 범죄의 방지,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에 필요하여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정인섭 편역, 앞의 책, p. 620.

11) “사법권의 권위의 유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Sunday Times c. Royaume-Uni (n° 1), 26 avril 1979, §§ 55-57, série A n° 30을 참조.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전술한 목적들이 제9조 제2항이 목적으로 하는 “질서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4)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본 재판소는 *S.A.S. c. France* [GC](n° 43835/11, §§ 124-136, CEDH 2014) 결정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서 도출된 일반 원칙을 언급하였고,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적용하였다. 본 재판소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위의 결정을 참조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히잡은 머리를 덮는 것이며, *S.A.S. c. France* 사건에서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재판소는 또한 본 사건과 보다 유사한 다른 사건 - 즉, 사법 절차의 범주에서 출두하는 어떤 사람이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한 사건인 *Hamidović* 사건과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복장을 착용한 것에 관한 *Ahmet Arslan et autres c. Turquie* (n° 41135/98, §§ 44-52, 23 février 2010) 사건 - 을 참조하고자 한다.

문제가 되는 제한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지, 그리고 국가 기관이 원용한 이유가 적합하며 충분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재판소는 우선 개별 국가의 법관이 수행한 논증 작업을 평가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본 재판소는 청구인은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형제의 죽음과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자격에서 청구인과 다른 손해배상청구인들은 브뤼셀 1심 법원의 2007년 1월 18일의 결정을 다투었으며, 2007년 6월 20일의 브뤼셀 항소법원의 재판에 히잡을 쓰고 참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법정 들어갈 때 법정 경비원이 히잡을 벗지 않으면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고 재판장의 이름으로 경고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고를 따르지 않은 청구인은 법정을 출입할 수 없었다.

2007년 9월 12일의 결정을 통해 브뤼셀 항소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법정출입금지결정은 사법 법전 제759조에 부합한다고 하였고, 파기원 또한 2008년 6월 25일의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정을 통해 볼 때, 청구인을 법정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브뤼셀 항소법원의 재판장은 청구인이 착용한 허잡을 금지하는 법규정(즉, 사법 법전 제759조)을 참조하는 것에 만족했으며, 문제의 조치가 법률에 부합한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자신의 결정이유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본 사건의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본 재판소는 청구인은 일반 시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며, 그 결과 공적 지위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신중 의무(*obligation de discrétion*)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청구인은 문제의 조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공적 장소인 브뤼셀 법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본 재판소는 비록 법원이 “공적 공간”(espace public)에 속할 수 있지만, 도로 또는 광장과 유사한 공적 장소는 아니라고 본다. 법원은 공립학교와 같이 종교적 중립성이 자신의 종교의 표현할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보다 우월할 수 있는 “공적” 시설이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의 법정 출입의 금지를 통해 추구한 목적이 공적 영역의 중립성의 보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재판소는 문제의 조치가 질서유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만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본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법정을 들어갈 때의 행동방식이 무례하거나,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협하거나 또는 위협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의 제한의 필요성은 확고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종교를 표현할 자유에 가해진 침해는 민주사회에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위반이 존재한다.

[유럽인권협약 제41조12)의 적용과 관련하여]

(1) 손해배상

청구인은 본 재판소에 브뤼셀 항소법원의 출입금지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10,000 유로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편, 벨기에 정부는 본 재판소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본 재판소가 판단하기에 청구인은 항소법원의 출입금지를 통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형평에 따라 그리고 청구인이 파기원의 절차에서는 허잡을 쓰고 법정에서 참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재판소는 손해배상으로 1,000 유로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2) 소송비용

청구인은 확실한 증빙서류 없이 소송비용으로 2,000 유로를 청구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송비용이 현실성, 필요성, 합리적인 성격의 범위 하에서만 소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본 사안의 경우, 비용의 현실성을 증명할 어떠한 서류 및 절차와 시간이 할애된 어떠한 비용분배도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

12) 유럽인권협약 제41조 정당한 만족 “협약 또는 의정서의 위반이 있었으나 해당 계약국의 국내법이 부분적인 보상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재판소는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정당한 만족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인섭 편역, 앞의 책, p. 625.

- 재판관 VUČINIĆ, GRITCO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 제9조의 위반이 있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다수의견 사법 법전 제759조에 대한 벨기에 법관의 해석 및 적용이 예견가능성의 요청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적 불확실함과 불안정성을 초래하는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자 하는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 문제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결과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예견가능성의 요청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과 민주사회에서의 제한의 필요성의 관점에서의 보충적인 논리 전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여러 상황에서 볼 때, 사법 법전 제759조의 규정 그 자체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의 보호영역에 어떠한 문제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 법정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규정에 대해서 회원국들 간의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¹³⁾ 우리는 사법 법전 제759조은 법정의 질서를 규정하며, 사법 법전 제759조의 적용 자체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정부 측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렇지만, 본 사건에서 벨기에 법원에 의해 법정 질서에 관한 규정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방식은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위반된다.

본 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이라는 표현에서 도출되는 요청들 중의 하나는 바로 예견가능성이다. “예견가능성”의 조건은 청구인이,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법규정의 작성에서부터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해석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아는 경우에 충족이 된다. 따라서, 개별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

13)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 12월 5일의 Hamidović. c. Bosnie-Herzégovine(n° 57792/15) 사건의 Ranzoni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참조할 것.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된 규범만이 “법률”(loi)로 간주될 수 있다.¹⁴⁾ 그리고 유럽인권협약 제8조 내지 제11조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이라는 표현에서 “법률”(loi)이라는 말은 성문법 및 불문법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법률”(loi)은 성문의 법규정 및 판사들에 의해 “해석된 법”(droit élabor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컨대, 본 재판소는 “법률”(loi)을 권한이 있는 법원이 해석한 것으로서의 유효한 법규정(texte)으로 이해한다.¹⁵⁾

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법 법전 제759조가 벨기에 항소법원과 파기원에서 다르게 해석 및 적용되었다. 벨기에 법관들에게는 문제의 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 가해진 제한(청구인의 종교를 표현할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예견가능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법 법전 제759조에 대한 권한 있는 법원의 해석 및 적용의 결과로 가해졌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의 문제가 되는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였는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계속해서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본 재판소의 분석은 문제의 조치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에 그쳤어야 했다.

- 재판관 MOUROU-VIKSTRÖM 의 반대의견

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제재는 법정에서의 토론에 청구인이 참석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렇지만, 청구인의 불참의 부정적 효과는 청구인의 변

14) 특히, Hashman et Harrup c. Royaume-Uni [GC], n° 25594/94, §31, CEDH 1999-VIII, Hassan et Tchaouch c. Bulgarie [GC], n° 30985/96, §84, CEDH 2000-XI, Bayatyan c. Armée [GC], n° 23459/03, §113, CEDH 2011, Güer et Uğr c. Turquie, nos 31706/10 et 33088/10, §50, 2 décembre 2014 참조.

15) 특히, Sunday Times c. Royaume-Uni (n° 1), 26 avril 1979, §47, série A n° 30, Kruslin c. France, 24 avril 1990, §29, série A n° 176-A, Casado Coca c. Espagne, 24 février 1994, §43, série A n° 285-A, Leyla Şhin c. Turquie [GC], n° 44774/98, § 88, CEDH 2005-XI 참조.

호사에 의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 다수의 견해가 타당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정은 다른 공공 장소와 동일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법정에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판결이 내려지는 장소는 복장에 대한 규율의 관점에서 일반 도로 또는 광장과 동일시 될 수 없다. 게다가, 법원내부에 실제로 출석한 사람의 지위에 따른 구분도 존재한다. 사람의 지위는 특히 종교적 믿음의 복장을 통한 표현에 있어서 신중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방청객으로 법정에 단순히 출입하는 것은 소송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과 같을 수 없다.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종종 청구하거나, 논쟁을 함으로써 법원이 직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소송의 주체, 공무원, 또는 법률보조인은 법복을 착용하며, 소송의 전개는 공정한 사법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복장의 착용이 하나의 구성요소로 속하는 사법적 “의식”은 법적 토론을 소송의 중심에 두기 위해 각자의 개인적 차이를 지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와 같은 의무들을 지켜야 된다.

본 사건에서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화 사유로서 질서의 보호는 무질서의 방지책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법률과 규칙에 의해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보장되는 국가제도의 원활한 기능의 한 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정은 “공립학교처럼 신앙에 대한 중립성의 존중이 자신의 종교를 표현할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보다 우월한 공적 시설이다.”¹⁶⁾

16) Leyla Şahin c. Turquie [GC], n° 44774/ CEDH 2005-XI.